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주식회사 팜스코

제정 2021년 11월 11일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 37 조의 2(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13 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이사의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 ② 성과급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소집)

- ① 정기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임시위원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 10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